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고시 개정(환경부고시 제2016-254호) 및 관련 시험·검사 안내



담당자	내 용	연락처	e-mail
천사호 과장	위해우려제품 전체	043-711-8887	shchun@fiti.re.kr
김윤경 연구원	위해우려제품 접수/발급	043-711-8867	ykkim@fiti.re.kr
박성열 연구원	시험·검사 관련	043-711-8837	psy065@fiti.re.kr

위해우려제품(생활화학제품) 제도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6(위해우려제품의 정의), 34조(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254호)」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생활화학제품)을 생산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자가검사를 받은 이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후, 제품 포장에 자가검사 번호(안전기준 적합시 시험기관으로부터 부여) 및 표시기준(관련 고시 별표 7)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하여 출시

■ 위해우려제품 종류(화평법 제2조의 16의 정의)

일반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살생물제품 :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

-위해우려제품의 종류(환경부 고시 제2016-254호 기준)-

산업부 이관 품목(8종)	신규 관리 품목(10종)	
일반 생활화학제품(8종)	일반 생활화학제품(6종)	살생물제품(4종)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다림질 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II 고시 개정 내용

■ 기존 관리 품목 안전기준 강화

-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product type)의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을 금지
-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Didecyldimethyl ammonium chloride)은 실내공기용은 0.0015 % 이하, 섬유용은 0.18 % 이하로 안전기준 추가
-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는 모든 제형(액상형, 젤형 등)의 방향제에 사용 금지
-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 추가

-기존 관리 품목 안전기준 강화 내용-

품 목	제 형	추가 안전기준 물질(mg/kg)	추가 사용제한 물질
섬유유연제	스프레이형	리모넨(10,000 이하)	MIT / CMIT
	스프레이형 외		-
코팅제	스프레이형	테트라클로로에틸렌(400 이하)	MIT / CMIT
방향제	모든 제형	-	MIT / CMIT
탈취제	스프레이형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실내공기용 15 이하, 의류·섬유·신발용 1,800 이하) 에틸렌글리콜(2,000 이하)	MIT / CMIT
그 외 14개 제품	스프레이형	-	MIT / CMIT

■ 신규 관리 품목(3종) 지정

-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

-신규 관리 품목 안전기준-

품 목	제 형	안전기준 물질(mg/kg)	사용제한물질	표시사항물질
인쇄용 잉크·토너	토너	벤젠(5 이하)	Cd, As, Pb Cr(VI), Hg 아조염료(22종)	-
	잉크	벤젠(17 이하)		
다림질 보조제	스프레이형	IBPC(10 이하) 아이소프로판올(30 이하)	PHMG / PGH / PHMB MIT / CMIT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글루타르알데하이드	아세톤
	그 외 제형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글루타르알데하이드	
살조제	스프레이형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600 이하) 클로로포름(100 이하) 이산화염소(1,000 이하) 과아세트산(3,000 이하)	PHMG / PGH / PHMB MIT / CMIT	2-부톡시에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그 외 제형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600 이하) 클로로포름(300 이하)	-	

■ 성분 표시 기준 개선

-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 * 살생물질: 살균·항균·소독·방부 등의 기능이 있는 화학물질
 - **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화학물질
-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대해 쓸 경우 농도가 0.01 % 이상이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를 표시
-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광고 문구를 쓸 수 없음.

III 경과조치

■ 기존 관리품목(15개 품목)

- 안전기준
고시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2017. 3. 29까지 기준 충족)
- 표시기준
고시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18. 6. 30)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

■ 신규 관리품목(3개 품목)

- 안전기준
고시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2017. 3. 29까지 기준 충족)
(인쇄용 잉크·토너의 경우 12개월 경과한 날-2017. 3. 29까지 기준 충족)
- 표시기준
고시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18. 6. 30)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

IV 시험·검사 안내

■ 시험·검사 절차



* 신청서는 연구원 홈페이지 확인

** 단, 스프레이형 탈취제의 경우 내용물이 1 L 이상 필요

*** 생분해도 시험의 경우 근무일로 45일 소요

■ 품목별 시험·검사 수수료

-위해우려제품별 자가검사(패키지) 수수료-

분 류		수수료(원) (V.A.T 별도)	시험·검사 기간(일)	비 고		
세제류	세정제	세정제	250,000	10 ~ 15	산업기 사용에 따라 10,000 원 추가 가능	
		스티커제거용	400,000			
	합성세제		1,150,000	45	생분해도 시험 포함	
	표백제		160,000	10 ~ 15		
	섬유유연제		910,000	10 ~ 15		
코팅· 접착제류	코팅제	광택용	일반형	350,000	10 ~ 15	
			스프레이형	400,000	10 ~ 15	
		표면보호	일반형	400,000	10 ~ 15	
			코팅용 스프레이형	450,000	10 ~ 15	
	방청제		350,000	10 ~ 15		
	김서림방지제		350,000	10 ~ 15		
	접착제		일반형	520,000	10 ~ 15	
			스프레이형	520,000	10 ~ 15	
			가발용	420,000	10 ~ 15	
			속눈썹용	440,000	10 ~ 15	
			네일용	320,000	10 ~ 15	
다림질보조제		100,000	10 ~ 15			
방향제류	방향제		310,000	10 ~ 15		
	탈취제	일반형	450,000	10 ~ 15		
		스프레이형	690,000	10 ~ 15		
		미생물탈취제	340,000	10 ~ 15		
염료· 염색류	물체 탈·염색제		120,000	10 ~ 15		
	문신용 염료		문의 필요	문의 필요		
	인쇄용 잉크 토너		50,000	10 ~ 15		
살생물 제류	소독제		220,000	10 ~ 15		
	방부제		200,000	10 ~ 15		
	방충제		200,000	10 ~ 15		
	살조제	일반형	150,000	10 ~ 15		
		스프레이형	270,000	10 ~ 15		

* 용기강도, 누수, 중량, 외관 등 수수료 : 각 5000 원

** 기본료 : 10,000 원

■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물질 수수료

-고시 개정에 따른 추가항목 수수료-

품 목	시험항목	수수료(원)
섬유유연제	리모넨	100,000
코팅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0,000
탈취제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100,000
	에틸렌글리콜	50,000

■ 기타 사용제한물질, 표시대상 물질, 살생물질(Biocide) 수수료

-고시 개정에 따른 추가항목 수수료-

시험항목	수수료(원)	비 고
PHMG/PGH/PHMB	각 1,500,000	- 2개 시료 이상 시험의뢰시 담당자 문의 요망
CMIT	50,000	
MIT	50,000	
사용제한물질, 표시대상물질	항목별 50,000 ~ 100,000	- 시험 의뢰전 분석물질에 대하여 담당자 문의 요망
살생물질	항목별 50,000 ~ 100,000	
알러지 유발 향료류 (총 26종)	100,000원(1개 물질 기준)	- 추가 1개 물질당 30,000원 - 24종 의뢰시 700,000 원 - 자연추출물 2종 (Oakmoss, Treemoss extract의 경우 담당자 문의 요망)



문의사항

담당자	내 용	연락처	e-mail
천사호 과장	위해우려제품 전체	043-711-8887	shchun@fiti.re.kr
김윤경 연구원	위해우려제품 접수/발급	043-711-8867	ykkim@fiti.re.kr
박성열 연구원	시험·검사 관련	043-711-8837	psy065@fiti.re.kr